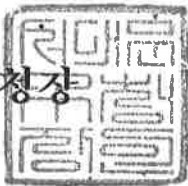
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. 10. 7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# 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종전에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로 삭제된 내용이 상위법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 (안 제11조, 안 제23조, 안 제29조)
- 시장의 인정 취소 근거를 특별법 신설조문으로 개정
  - 상인회의 등록취소 근거 신설로 조례 재반영
  -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근거 신설로 조례 재반영
  - 내용 : 취소 시 「행정절차법」의 청문절차 이행, 즉시 통지의무 명문화

나. 상위법 근거 신설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반영 (안 제30조의2, 안 제36조의2)

-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(5년), 갱신 횟수(1회) 등 특례
-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 규정

다.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는 사항 삭제 (안 제38조)

- 과태료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게 되므로 불필요한 규정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참조:일자리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청홈페이지 [【http://www.sdm.go.kr】](http://www.sdm.go.kr) 메인화면 상단(구정소식/공고/입법예고)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(우편번호03718)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
(연희동)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

라. 기타 문의처 등 : 전화 02)330-1901, 팩스 02)330-1368